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35

발의연월일: 2022. 9. 20.

발 의 자:유상범·권명호·김도읍

김학용 · 노용호 · 이명수

이종성 · 정경희 · 조수진

조은희 의원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작신고내용이 인삼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한편, 인삼이 농산물 가운데 최초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라는 명 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2020.12.1.)되었는바, 이를 더욱 계승·발 전시키고 인삼 경작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 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 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 마.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 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 설).

법률 제 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공할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경작하려는"을 "경작(수경재배를 제외한다)하려는"으로,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합등이 알린 경작신고내 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류제품의 생산·유통·검사 등을 지원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산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 2.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진흥 및 촉진
- 4. 인삼종자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 5. 인삼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6. 인삼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7. 인삼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5(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의6(인삼의 날) ①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3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삼의 경 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 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u>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u> <신 설></u>			제3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에 제
			<u>공할 수 있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 또는 그 밖의 관련 기
			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u>경작</u> 저 한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등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수 있다.

1. • 2. (생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4조(경작신고) ① <u>경작</u>
(수경재배를 제외한다)하려는
<u>신고하여야 한다</u>
②
<u>ठ</u> ोव
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③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조합등이 알린 경작 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인삼자조금단 체에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류제품의 생산·유통·검사 등을 지원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산산업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 산·유통·검사 지원
 - 2.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

 관리

-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진흥 및 촉진
- 4. 인삼종자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 5. 인삼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6. 인삼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7. 인삼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 리
-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 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 기관이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5(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 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 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의6(인삼의 날) ① 인삼재 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 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인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

제27조의2(청문) <u>시장</u>·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 설></u>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 <u>1</u>. (생 략) 2. ~ 10. (생 략)
- ② (생략)

<u>시할 수 있다.</u>
제27조의2(청문) <u>농림축산식품부</u>
<u> 장관, 시장</u>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
기관의 지정취소
제33조(과태료) ①
<u>.</u>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
한 자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u>1의3</u> .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